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협회 조사부

미국

미 법무부, 직접 위성방송회사 간의 기업결합 저지소송 제기

“유선방송산업의 독점”에 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미국 법무부는 5월 12일, 2개 직접 위성방송회사간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들 기업 중 하나는 여러 대형 유선 방송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다.

Primestar Inc.와 머독의 위성방송사업간의 결합은 “끊임 없이 가격이 인상되어 온” 산업에서 경쟁 및 가격 인하의 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국 반트러스트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Joel I. Klein 국장은 밝혔다.

11억 달러 규모의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Primestar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5대 유선TV 회사들은 위성을 통하여 시청자 가정에 설치된 접시형 안테나로 TV 프로그램을 직접 송출하는 새로운

사업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직접 위성방송(DB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허가 3건 중 마지막 것이 Primestar사에 부여될 것이다.

DBS 사업은 유선TV에 직접 적이고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다수의 채널, 그리고 선명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imestar사의 사장인 Dan O'Brien은 동 회사가 그간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변경에 관하여 법무부와 협상을 벌여 왔었고 정부가 기업결합 저지를 위해 제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이는 확실히 놀랄 만한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도 하였다. 그는 또한 법무부가 신의성실에 기하여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Primestar사도 머독도 당해 기업결합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O'Brien 사장은 밝혔다. “우리는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으

며, 법무부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생각이다. 법무부는 정치적 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Consumers Union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그리고 Direct TV 및 EchoStar Communications와 같은 경쟁 DBS업체도 당해 기업결합을 반대하였다.

Primestar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들 5개 유선방송회사는 전부 합쳐 미국 전역의 6,700만 유선TV 시청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반면 DirectTV사 및 EchoStar사는 전체적으로 500만 명을 약간 넘는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과거 유선TV 시청자들이다.

정부의 가장 최근 수치를 보면 유선TV 시청료는 97회계년도에 7.9% 상승하였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전반적 물가상승률은 겨우 1.4%였다.

정부는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Primestar사를 소유하고 있는 유선방송회사들 – Tele-Communications Inc.(TCI),

Time Warner Inc., Comcast Corp., Cox Enterprises Inc. 및 US West / MediaOne－의 독점은 보호받고, 위성방송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경쟁업체는 배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CI사와 Time Warner사는 미국 제1위 및 제2위의 유선방송회사이다.

United States Satellite Broadcasting Inc. 소속의 DirecTV 및 EchoStar Communications Corp.도 당해 기업결합에 반대하였는데, 이들은 머독에게 Primestar사의 지분 취득이 허용된다면 인기 있는 유선방송 네트워크－fX, Fox Sports Net, The Fox News Channel 및 The Family Channel－프로그램은 자신들에게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TC도 또한 당해 기업결합을 심사중이다.

■ '98. 5. 12, The New York Times

대기업간 결합, 미 정부가 검토 팀 구성 - 경쟁제한 등 조사

미국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기업결합·취득의 미국 경제에의 영향 조사에 착수하였다. 다음 주 중에 백악관 내에 루빈 재무장관, 데일리 상무장관 등 각료를 포함하여 이 문제의 검토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융, 자동차, 통신 등의 대형 기업결합이 경쟁의 제한 및 소비자 이익의 방해물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이 팀은 조사·검토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클린턴 대통령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토 팀은 스파링 대통령 보좌관(국가경제회의 담당)이 의장이 되어, 재무장관, 상무장관 외에 예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서머스 재무차관 등이 참가한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대형 기업결합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에서는 대형 미국은행인 시티코프와 보험, 증권을 포함하는 트래블러스사가 기업결합을 발표하였고, 통신에서는 대형 지역전화회사인 SBC Communications사가 Ameritech사 취득을 결정, 구 AT&T사 분할로 탄생한 지역전화회사의 재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크라이슬러 사와 독일의 다이مل러 벤츠사의 기업결합 등 국제적인 재편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형 기업결합 문제의 조사에 나선 것은 의회 일부 등에서 대형 기업결합이 산업의 과점을 초래, 가격인상 및 소비자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98. 5. 14, 일본경제신문

미 연방정부 및 20개 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 반트러스트 제소

미국 연방정부 및 20개 주정부는 5월 18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하여 광범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경쟁을 파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기 위한 불공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소송에서는 현재 가장 성공적인 미국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용 컴퓨터 소유자들에게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의 이득의 향수를 거부하고 운영체제에서의 독점을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로 확대시키기 위한 위법한 다양한 관행을 이용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업체를 파괴하고 성능에 의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위법한 반경쟁적 관행을 하고 있다”라고 연방 반트러스트 국장인 Joe Klein은 법무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정부가 혁신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소송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미국, 소비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21세기로 인도하는 개인

용 컴퓨터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이 출시한 윈도우즈 98에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요 경쟁제품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추가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20개 주 및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연방정부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워드프로세서 및 스프레드 쉬트 같은 “오피스 제품 조합”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케팅도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다. 브라우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주는 이를 제품이 운영체계에서 분리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 및 고객들에게는 결전의 날이며,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투자자, 이상가 및 사업가들에게는 독립기념일이기도 하다”라고 커넥티컷 주 법무장관인 Richard Blumenthal은 연방 및 기타 주 관리들과 연합하여 광범한 반트리스트 제소를 개시하는 자리에서 언급하였다.

연방 및 주 정부 관리들은 또 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에 넷스케이프사에 접근하여 경쟁하기보다는 시장을 분할하자고 제의하였으며, 그러나 넷스케이

프사가 이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한 주들은 캘리포니아, 커넥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사스, 첸터키, 루이지애나,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및 워싱턴 D.C.이다.

Klein 국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현재 개인용 컴퓨터의 90% 이상에서 사용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개정판인 윈도우즈 98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예비적 금지명령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해 브라우저가 이미 윈도우즈 98에 통합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일 당해 금지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부과되면,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하드웨어 내에 포함 시킬 브라우저로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용자들이 보게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고안의 초기 화면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Janet Reno 법무장관은 소비자 및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

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기 위해 독점력을 이용하였다”고 Reno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 주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법무부간의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에 제시했던 타협안을 철회하면서 당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위법사실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5월 넷스케이프사에 접근하여, 시장을 분할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브라우저를 공급하며 넷스케이프사는 윈도우즈 외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훨씬 좁은 범위의 컴퓨터에 브라우저를 공급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현재 브라우저 시장에서 60%를 점유하고 있는 넷스케이프사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음.

-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강제하여 윈도우즈 95 운영체제의 라이센스 조건으로서 자사의 브라우저를 라이센스받고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윈도우즈 98과 관련하여서도 똑같이 행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 고안의 초기 화면을 동일하게 채택하도록 하여 이보다 더욱 눈에 띄는 경

쟁업체들의 표시가 없도록 하였음.

- 미국 내에서 최대이며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서비스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거의 전부와 반경쟁적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은 서비스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배타적인 또는 1차적 브라우저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물 제공업체와 위법한 계약을 맺어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업체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이들의 사이트를 소비자들이 발견하기 쉽도록 하여 주었음.

연방정부의 소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내부문서 내용 중 일부 발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성능에 기한 성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2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hristian Wildfeuer는 “IE4(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성능에만 의존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리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OS(운영체제)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내비게이터 대신 IE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수석부사장인 James Allchin은 1996년 12월 2일, “원도우즈를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IE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 '98. 5. 18,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American Airlines - British Airways간 제휴 변경 촉구

미 연방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교통부에 대하여 AMR Corp.의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간의 제휴 제안을 인가하기 전에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교통부에 접수된 당해 논평에서 법무부는 다른 항공사들이 미국과 런던 히드로 공항간 노선에서 새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는 미국과 영국간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대 항공사이다. 이들은 운항 스케줄 및 연결편을 조정하고 상용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하며 상호간에 상대방 항공편의 좌석을 판매하도록 할 제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휴는 교통부로부터

의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 인가를 요한다. 2년 전 발표된 이 제휴에는 유럽 규제당국의 승인도 필요하다.

법무부는 만일 자신이 미국 반트러스트법 하에서 당해 협정을 검토한다면 이 제휴 제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해 제휴가 미국과 영국간의 항공서비스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는 항공편 이용객들이 자불하여야 하는 미국과 영국간의 항공요금이 상당히 인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Joel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은 말하였다.

American Airlines 대변인은 동 항공사는 법무부의 논평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항공사간 제휴를 위하여 설정된 기본규칙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Virgin Atlantic 항공사 회장인 Richard Branson, United Airlines 및 기타 경쟁 항공사들이 법무부에 대하여 우리의 제휴를 즉시 저지하라는 요구를 견뎌 왔으며, 법무부도 또한 명백히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동 대변인은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번 논평이 제휴 절차의 계속을 보장하는 중요

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방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당해 협정의 이득이 경쟁에 대한 손해를 명백히 능가할 경우 이를 인가할 수 있다. 교통부 관리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휴가 미국과 영국간의 “영공 개방” 협정으로 귀결될 경우 대중이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과 가격설정에 대한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교통부는 이착륙 구역을 확보하여 경쟁업체들이 미국과 런던 히드로 공항간 왕복 항공편을 적어도 매일 24편 증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무부는 언급하였다.

더욱이 법무부는 시카고-런던 노선과 댈러스-런던 노선은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들 항공사가 이들 도시간의 노선에서 요금을 공동으로 책정하거나 공동으로 마케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들 항공사가 운영하는 이들 노선 양 끝에는 중추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경쟁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는 미국과 런던간

항공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 '98. 5. 22, The Wall Street Journal

미 FTC, 인텔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송 준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텔사가 개인용 컴퓨터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의 독점적 제조업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일부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사에 관여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지난 5월 27일 밝혔다.

이 소송에서는 인텔사가 자신과 특허 및 관련제품 문제로 분쟁상태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자신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에 관한 주요 기술적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제품의 설계가 불가능하다.

만일 당해 소송이 계획대로 제기될 경우, 이는 연방정부가 “원텔”, 즉 산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우즈 운영체제와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합쳐 부르는 2대 개인용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대기업들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될 것이다. 인텔사의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는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두뇌와 신경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무부 및 20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5월 18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워싱턴 D. C.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9월에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FTC 소속 법률가들은 인텔사가 약탈적 가격설정 및 계약조항을 통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대하고 경쟁자들을 압착하여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비난하며 올해 하반기에 FTC가 인텔사에 대하여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제소 내용과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빠르면 5월 29일 FTC 조사반은 반트러스트 제소에 대한 자산들의 권고안을 전체회의에서의 승인을 위해 FTC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FTC 위원들은 1주일 내지 10일 후에 당해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하여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인텔사의 대변인인 Chuck Mulloy는 “우리의 입장은 이것이 아직 공식화된 것이 아니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동 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우리는 반

트리스트 집행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관련 절차가 종결되면 그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결정하리라고 믿는다.”

당해 조사에 관여하였던 법률가들은 인텔사의 임원들이 반트러스트 제소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5월 초에 워싱턴 D. C.에서 FTC 직원들과 회합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텔사의 임원들은 정부 관리의 견지에서 볼 때 어떠한 중요한 양 보도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모든 거래관행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FTC와 법무부는 미국 반트러스트법을 집행할 관할권을 동등하게 갖고 있으며, 이들 두 기관은 어느 기관이 신규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자신들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법무부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을 맡고 있으므로 FTC는 인텔사 사건을 맡은 것이다.

한 법률가에 따르면 정부의 제소 내용의 핵심은 “독점사업자는 시장에서 대안이 없는 고객에 대하여, 이 고객이 단지 자신과 분쟁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의 거래를 중단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제소 내용에 따르면 인텔사는 Digital Equipment Corp. 및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제조업체인 Intergraph Corp.를 포함

한 4개사에 대하여 위법한 수단으로 보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Intergraph사와 Digital사는 모두 작년에 인텔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달 앨라바마주 버밍엄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판결에서는 인텔사가 Intergraph사 사건에서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Intergraph사와 Digital사는 특히 분쟁에 연루되어 있었다. 인텔사는 특히 분쟁에서의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Intergraph사에 대해 인텔사의 펜티엄 II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군에 대한 사양을 제시하는 제품자료책자의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당해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주장될 것이다.

이러한 칩은 개인용 컴퓨터의 두뇌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컴퓨터 제조를 위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독점사업자에게는 핵무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한 FTC 소속 법률가는 언급하였다.

만일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면 인텔사의 행위는 반트러스트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해 법률가들은 말하였다. 그러나 인텔사는 칩에 대한 유일한 공급원이므로, 지난 '98년 4월의 Intergraph사

사건판결에서 미국 지방법원판사인 Edwin Nelson은 인텔사가 “전력의 경우에서와 비슷한 필수설비”이며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 회사에만 공급하고 다른 회사에는 공급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Digital사도 Intergraph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봄에 인텔사와 특허 분쟁을 벌였다. 그 소송에서 Digital사는 인텔사가 펜티엄 칩의 설계시에 Digital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트러스트 소장에서는 인텔사가 그 당시 Digital사에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되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여름 특허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 후 Digital사는 컴팩 컴퓨터사의 매수 제의에 동의하였다.

■ '98. 5. 28, The New York Times

EU

Kluwer / Reed Elsevier
합병계획 취소

지난 '98년 3월 11일, 구주위원회는 네덜란드의 출판사업자인 Wolters Kluwer(이하 「Kluwer」라 한다)와 영국의 출판·정보서비스 사업자인 Reed Elsevier(이하 「Reed」라 한다) 양사가 합병을 중지하

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발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주위원회는 '97년 12월 2일에 개시한 상세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경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의고지서를 '98년 2월 20일 당사자에게 전달하였고, Kluwer 및 Reed는 '98년 3월 9일자로 본건 합병을 취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 Kluwer와 Reed사는 전문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1위와 제2위의 사업자로서 본건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세계에 있어서 과학잡지·서적 시장,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 법률 및 세무관련 서적, 영국에서 초등·중학교 교육서적, 네덜란드에서 각종 비지니스 서적, 네덜란드어 사전과 병행하여 구주에서 수송데이타 비지니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2) 구주에서 법률, 재무 및 과학정보의 공급분야에서 경쟁적 환경이 저해되고 고객이나 소비자가 이를 정보를 입수하는 데 따른 대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본건 당사자의 재정력 및 저작권이 통합됨으로 인해 서 전자매체에 의한 전문적 정보의 공급분야에서의 경

쟁사업자의 참여 의욕이 소멸되고, 동 분야에서 경쟁적 환경에 영향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98. 3. 11, 구주위원회 신문발표문

**유럽위원회,
Allianz사의 Assurances
Générales de France사
취득을 조건부로 인가**

1998년 5월 8일, 유럽위원회는 독일 보험회사인 Allianz AG(이하 "Allianz사"라 함)가 프랑스 보험회사인 "Assurances Générales de France사"(이하 "AGF사"라 함)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인가했다. 당해 기업결합은 생명보험 회사와 비생명보험회사간의 결합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업결합은 이탈리아 및 유럽 전체의 수출보험 및 신용보험 시장에 주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해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하는 업체의 높은 시장점유율 및 AGF사와 유럽의 상업적 위험에 관한 제1위 수출신용보험업체인 Coface 사간에 존재하는 직접적 연계의 영향이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형성 내지 강화는 경쟁업체들의 우려의 대상이었다.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추가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이것이 적시된 경쟁상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의 Allianz 그룹은 일단의 보험업체 중 선두주자이며 유럽 내 최대 산업계 보험업체이다. AGF사는 프랑스 보험회사로서 EEA 및 전세계의 생명 및 비생명보험, 그리고 재보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프랑스에서는 전문직종대상보험, 휴가보험 및 해상운송항공보험 활동이 중첩되며, 아일랜드에서는 책임보험에 서, 독일에서는 민사책임보험, 가사보험 및 사고보험에서 활동이 중첩된다. 그러나 아일랜드 및 독일의 책임보험과 같이 이들 당사자가 시장의 선두주자인 경우에도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업체는 다수 존재한다.

이번 사건의 결정을 위해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전유럽 차원과 각국 차원에서 평가하여야 했다. 전유럽 차원에서는 새로이 탄생하는 업체가 신용보험 시장에서 2위 업체의 점유율의 2배를, 그리고 3위 업체의 점유율의 3배 이상을 보일 것이었다. 당사자들이 이미 지배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그 아래의 경쟁업체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활동중인 몇몇 경쟁업체가 있다는 사실 및 최근의 시장 진입

의 증거,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당해 기업결합으로부터 결과될 시장점유율 증가가 미미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AGF사 및 수출신용보험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자인 Coface사간의 기존의 연계는 유효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추가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AGF사와 Coface사간의 구조적 연계는 이들 두 회사가 수출신용보험 시장에서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경쟁하게끔 변경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들의 서약서를 검토하고 경쟁업체들의 견해를 청취한 후 이러한 서약이 달성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였다. 본 사건에서 서약내용은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활동의 제한적 일부에 해당하는 경쟁상 문제를 명백히 해소하고 있다.

■'98. 5. 11, 유럽위원회 보도

유럽위원회, 독일 방송사간 제휴 저지

유럽 반트러스트 당국은 5월 27일 독일의 가장 강력한 방송 그룹 중 3개사간의 야심적인 디지털 텔레비전 제휴를 저지함으로써 개별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점증하는 권한에 관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대형 출판 및 방송재벌인 Bertelsmann AG, 독일의 지배적인 전화 및 유선방송회사인 Deutsche Telekom AG, 그리고 뮌헨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에 대한 독일측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Kirch Group간의 제휴 제안승인을 거부하였다.

당해 결정은 독일에서 첨단 텔레비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 시장이므로 당해 합작 투자사업의 실패는 유럽의 기타 방송재벌간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또한 비밀스럽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Kirch Group의 창업주인 Leo Kirch에게 커다란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디지털 TV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상당 부분은 혈리웃에서 제작된 영화 판권을 매입함으로써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당해 도박이 수자가 맞도록 해 줄 충분한 시청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3개 회사는 광범한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였는데, 여기에는 편당 요금지불 방식의 영화 및 스포츠 경기 생방송뿐만 아니라 십여 개의 텔레비전 채널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강력하고 호전적인 경쟁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지난 수개월 동안 당해 제휴 제안은 용인할 수 없는 독점 사업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다른 회사들에게 경쟁할 기회를 부여할 여러 제휴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 왔다.

Bertelsmann사에 따르면 Van Miert의 요구 중에는 관련 회사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경쟁관계인 TV 프로그램 제작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경쟁업체들이 관련 회사들의 쇼 및 영화 프로그램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 및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Kirch씨 및 Bertelsmann사의 최고임원인 Michael Dornemann과 5월 26일 가진 마지막 회합에서 Van Miert는 타협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유럽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당해 제휴의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시장이 개방된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할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라고 Van Miert는 밝혔다. “나는 구두 제안까지 하였는데 이는 Kirch씨의 동의는

얻었지만 Bertelsmann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부당하였다.”

Bertelsmann사의 BMG Entertainment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Dornemann은 동 회사는 더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여러 양보에 동의하였다”라고 Dornemann은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나는 그들이 가장 최근에 요청한 내용은 우리의 경쟁업체들을 보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Dornemann은 Bertelsmann사가 Kirch Group과의 다른 종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개방하고 있는 상태지만, 유료 TV 합작투자사업을 통합하려는 이번 계획은 “끝났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제휴 제안을 낸 3개 회사 모두 다른 업체들보다 이득을 얻기 위해 분주하였다. Bertelsmann사 및 Kirch사는 모두 위성을 통해 여러 채널로 흥행작 영화를 송출하는 독일의 기존 유료 TV 서비스인 Premiere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Kirch사는 또한 여러 채널 및 편당 요금지불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심적인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인 DF-1을 소유하고 있다.

Deutsche Telekom은 독일의 지배적인 유선TV 사업체이며

대다수의 독일 가정은 위성을 통해서보다는 유선을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있다. 동 회사는 프로그램 송출 및 마케팅업체로서 성공하고자 하고 있었다.

Kirch사의 고민은 언제나 시청자의 부족이었는데, 동 회사는 현재 3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산업계 분석가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명의 시청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Kirch사는 DF-1을 100만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시청자 기반을 제공하게 될 Premiere와 결합하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Bertelsmann사는 오랫동안 이 생각에 반대하여 왔으며, 또한 Premiere의 주요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작년에 이들 3개 회사는 다소 불안정한 제휴 협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Van Miert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해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이 없을 경우 이들 3개 회사는 명백히 독점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98. 5. 28, The New York Times

일본법인인 등택약품공업(藤澤藥品工業, 이하 「등택약품」이라 함)은 글루콘산 나토리움이라 호칭되는 산업용 세정제의 세계시장 분할과 국제카르텔에 참가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2,000만불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일본인 임원 또한 동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지난 1998년 2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된 동 사건은 글루콘산 나토리움에 관한 다섯 번째의 소송이었으며, 따라서 사법성에 의하여 제소된 일련의 국제카르텔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서, 본건 소송 결과 금년 벌금의 합계가 2억5천만불을 초과하게 되었다.

「본 사건은 외국기업의 카르텔로부터 미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트러스트국의 대응책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크라인 반트러스트국장은 언급하였다.

글루콘산 나토리움은 식품산업 및 가정용 부엌기구의 세척, 식품가공기계의 세척 및 페인트 제거제로 쓰이는 등 금속과 유리를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연간생산액은 5,000만불 규모이다.

본건은 등택약품의 임원이 글루콘산 나토리움을 생산하는 다른 세계적인 대기업과 1993년 8월부터 1995년 6월의 기간에 결

일본

일본의 등택약품공업, 미국 내에서의 글루콘(Glucon)산 나토리움 가격유지의 국제카르텔로 기소

쳐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협정을 했다고 기소한 것이다. 등택약품의 해당 사업부부장은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본 건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벌금 20만불을 지불하였다.

법무부는 가격 설정과 참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할당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부부장이 공모자와 만났다고 언급하였다.

등택약품공업과 동 기업의 해당 사업부부장을 고발하게 된 정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글루콘산 나토리움의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 것에 합의
- 공모자와 함께 참여기업들이 판매하는 글루콘산 나토리움의 시장점유율을 할당

- 합의에 따라 가격의 공포와 시행

- 합의한 가격 및 시장점유율의 감시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회합에 참여
- 본건 국제카르텔에 대한 유죄를 인정(법원에 의하여 승인될 전망)한 가운데 등택약품 및 상기 사업부부장은 수사의 진행에 협력하는 것에 동의했다.

1997년 9월, 반트러스트국은 독일의 AZKO Nobel chemicals BV와 Glucona BV, 2

개사와 동사의 임원인 Cornelis R. Nederveen과 Marcel L. Van Eekhout에 대하여 글루콘산 나토리움의 가격유지에 공모하였다 하여 동시에 제소하였다. 동 회사는 합계 1,000만불의 벌금을 과징받고 임원은 각각 10만불의 벌금을 받았으며, 3개월 후 같은 죄목으로 프랑스의 화학회사 Roquette Freres사 및 Bertrand Dufour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동사는 250만불의 벌금이, 임원에게는 5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98. 2. 25. 사법성 신문발표문

용어해설

정크본드 (Junk Bond)

'쓰레기(Junk)처럼 값어치 없는 채권'이라는 뜻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보통 B등급 미만을 받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세계적인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Moody's)社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社에서는 각각 Ba 이하와 BB 이하 등급의 원리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투기적 채권을 정크본드(Junk Bond)로 분류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이 높아서 투자적격업체에 속했던 기업이 경영 부실이나 악성채권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져 투자적격업체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만을 지칭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악성채권과 더불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M&A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회사채는 보통채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발행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무디스社는 '97년 12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수준의 투자만류등급인 Ba1으로 떨어뜨린 바 있고, '98년 1월 9일에는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외화예금의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다시 낮추었다.

우리의 IMF 프로그램 이행노력 여하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